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

1. 본인은 2019년 8월 16일 귀하에게 주택을 2년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35,000만원 지불하였습니다.
2. 계약 기간 경과 후 2023년 8월 15일까지 계약을 2년 갱신하기로 하고 금 1,5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3. 재계약 기간이 경과하여, 2023년 11월 30일에 본인은 임대한 주택을 반환하고, 귀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휴대폰 메시지로 합의하였습니다.
4. 귀하의 사정을 고려해 계약 종료일을 늦춰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23.11.30

통지인: 하진기(850122-1852028)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92, 1203동 601호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1단지)

피통지인: 양재필(650412-10023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53, 108동 1903호 (박달로, 한양비발디아파트)

발송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1203동 601호 (구월동, 구월힐스테이트롯데캐슬골드1단지)
하진기
수취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3 108동 1903호 (박달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양재필

